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성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3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문성호 의원(1명)

찬 성 자: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아이수루, 유만희, 유정인,
, 유정희, 윤영희,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37명)

1. 제안이유

- 쾌적하고 공정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영업장소 지정 및 금지, 영업 허용 수량 등을 정하는 한편,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 형식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형식에 맞춰 자구를 수정함(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 제1항 등)
- 나. 서울특별시장은 해당시설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또는 금지, 영업 허용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
-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가 첨부서류를 자치구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등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시행규칙”을 “이하 “시행규칙”으로 하고,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5의2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영업”을 “영업”으로, “시설·장소”를 “시설·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70조”를 “「관광진흥법」 제70조”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하

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주차장법」 제2조”를 “「주차장법」 제2조”로,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를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 혹은 행사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허용 수량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15의2”를 “별표 15의2”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사용계약”을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营业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장소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의 영업신고가 수리되어 영업
중이거나 영업자 공모 또는 선정 등 영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
해서는 제2조제1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 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u>시행규칙</u>”이라 한다) <u>별표15의2제9호</u>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u>음식판매자동차 영업</u>”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u>시설·장소</u>’라 한다)로 한다.</p> <p>1. 「<u>문화예술진흥법</u>」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p>	<p>제1조(목 적) ----- ----- ----- ----- -- 위해 「<u>식품위생법 시행규칙</u>」 <u>별표 15의2</u>----- ----- -----.</p> <p>제2조(영업장소) ① ----- -----“<u>시행규칙</u>”----- -----<u>별표 15의2제10호</u>----- ----- ----- <u>영업</u>”----- ----- “<u>시설·장소</u>”-----.</p> <p>1. 「<u>문화예술진흥법</u>」 제2조제1항 제3호----- -----<u>지방자치단체</u>,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항----- ----- -----</p>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6. (생략)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2. 「관광진흥법」 제70조-----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4.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5. 6. (현행과 같음)

7. 「주차장법」 제2조-----
----- 서울특별시장(이

공영주차장

8. (생략)

9. 그 밖에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 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 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 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 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 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 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 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하 “시장”이라 한다)-----

8. (현행과 같음)

9. ----- 시장-----

② -----

----- 허용장소로 지정하 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 혹은 행사 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허용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
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
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
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
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
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
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
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
---- 별표 15의2-----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 시설사용계
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
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
다)---.

1. -----
----- 각 호-----

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
는 급여 수급자

3.·4. (생략)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
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③ (생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
조제1항제1호-----

3.·4. (현행과 같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
조-----

②·③ (현행과 같음)